

2020년도 제2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15.(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9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50건(안전번호 제2020-116950호~11777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16950호는 클라우드에서 100개의 최신 인기가요 음원파일을 전송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16951호는 국외 요리 서적에 기재된 약 246건의 레시피를 요리 블로그 운영자가 복제·전송한 사안임. 게시자가 어문저작물의 상당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점, 게시자가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국외 서적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16952호는 블로그 운영자가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첨부된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16953호~116961호는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일본 특촬물,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3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0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9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 회의록 8페이지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전차 회의록 5쪽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명, 게시물 제목, 카페명, 게시일자,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의 공개 여부, 6쪽, 7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물 제목, 카페명, 게시일자,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2쪽~2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일본 AT-X', 'TV조선', '넷플릭스', 'Adobe Systems Inc.', 'MAGIX', 'Microsoft Corp.', (주)한글과컴퓨터', '스툼픽쳐스코리아', '위너브러더스코리아', '일본TV아사히'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위원, D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5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6950 호는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원천 게시물의 서버가 국내일 경우 원천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부결했고 보호원은 원천 게시물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압축을 해제하면 100개의 음원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16950 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음원파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

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C 위원: 이견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69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11695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하였음. ■■■■■, ▲▲▲ 등 요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 책에 있는 레시피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외국 서적을 제시하면서)일반적으로 레시피나 향수 제조법은 저작권이 아닌 산업재산권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한 외국 서적은 상당한 수의 요리 레시피를 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진, 그림을 담고 있고 저자 나름의 방법으로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어 소재가 되는 개별 레시피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음. 해당 서적은 어문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원서는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블로그 게시물에 원서의 커버에 있는 그림을 게시물에 포함해서 작성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 10개의 광고 이외에 파워링크 광고도 함께 게재되어 있음. 광고가 게재되어 있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블로그 운영자도 원서에 있는 요리 레시피를 복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블로그 자료가

외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서로이웃에게만 블로그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16951 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블로그에 게시된 246건의 레시피에 대해 심의 요청되었는데 책에는 몇 개의 레시피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책에 총 500개 정도의 레시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원서의 첫 페이지에 저작권에 대해 “No part of this work covered by the copyright herein may be reproduced, transmitted, stored, or us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graphic,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hotocopying, recording, scanning, digitizing, taping, web distribution, information networks, or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except as permitted under Section 107 or 108 of the 1976 United States Copyright Act,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라고 밝히고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업적 저작물로 보기에 거리가 있고 원서에 있는 영어로 된 레시피와 한국어로 번역해서 함께 게시되어 변형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광고가 이 중으로 게재되어 있음.

- C 위원: 원서에 있는 레시피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게시했고 우리말 번역을 함께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변형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중요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인 요리 서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런 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한국은 판매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보고 원서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로그에 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레시피를 게시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 D 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원서를 PDF파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블로그 운영자가 PDF파일을 캡처해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됨.
- A 위원: 가결의견에 동의하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유사사건 심의에 참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69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11695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거가 "◆◆◆◆ ◆◆ ◆◆◆◆◆◆ ◆◆"이라는 제목으로 토렌트 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토렌트 마그넷 주소나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후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됨.

‘○○’ 시즌1은 ♪♪♪♪♪♪♪♪♪♪♪♪부터 ♪♪♪♪♪♪♪♪♪♪♪♪까지 미국 NBC에서 방영하였음.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토렌트 파일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다운로드 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불법복제물은 한글자막과 함께 제공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1695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임.

- A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695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116953호~11696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일본 특촬물과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음. ‘♥♥♥♥♥♥ ♥♥♥♥’은 일본 특촬물이고 나머지 저작물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존에도 동일한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 ☼☼☼ ☼’가 게시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 게시되어 약 5만명 정도가 조회하였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16953호~11696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B 위원, D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6953호~1169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16962호~11777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영화 '물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밴드명은 '☆☆☆☆☆☆☆☆☆☆☆☆☆☆☆☆☆☆'이고 멤버는 163명임. 누구나 검색해서 접속이 가능한 공개형 밴드이고 MP4 파일로 제공함. 해당 영화는 2020. 9. 4 미국에서 개봉했고 국내에서는 2020. 9. 17. 개봉 예정이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의 실사판으로 제작되었음.
(영화 '태백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밴드명은 '○○○○○○○○○○'이며 멤버는 7명임. 누구나 검색해서 접속이 가능한 공개형 밴드임. 해당 영화는 2020. 8. 20. 개봉한 국내 영화로 관객수는 2020. 9. 14. 기준 2,018명임.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이고 2020. 8. 31. IPTV 서비스를 시작했음. 속세로 내려온 태백권 전승자가 생계의 벽 앞에 지압원을 차리게 되는데 사채업자와 재개발 세력에 의해 지압원과 가족들이 위협에 처하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태백권을 다시 연마한다는 내용의 영화임.
(SW 'Adobe Premiere Pro CC 2015~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웹하드에서 180포인트에 판매중임. 다운로드받아서 설치하면 자동인

증되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됨.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24,000원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서 이용할 수 있음.

(영화 '밤셀: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모바일 웹하드에서 21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0. 7. 8. 개봉한 미국, 캐나다 영화로 일부 극장에서 상영 중임. 누적 관객 수는 18만 명임. 미국 거대 언론 미디어 채널인 폭스 뉴스에서 최초로 발생했던 성추행 고발 사건을 다룬 영화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16962호~1177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C 위원: 이견 없음.
- D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A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6962호~11777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16950호~11777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22.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